## 회의비 및 식대 집행기준

심의구분 : 개정

제안부서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 제안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수당 사용기준에 따라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정요점
회의비 및 식대 집행 내규				회의비 및 식대 집행기준			
제2조(정의) ① "회의비"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진과 외부인사의회의 시 집행한 경비를 말한다. ② "식대"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진의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말한다. ③ "외부인사"라 함은 연구참여진 외의 교외인사를 말한다. 제4조(집행기준) ① 회의비 및 식대의 1인당 상한액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회의 시 집행한 경비를 말한다.			용하는 용어로 변경
구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외부인사	구분	참여연구자	외부인사	자와 참여연구자의 상한액
회의비	30,000원	30,000원	30,000원	회의비	30,000원	30,000원	통일
식대	15,000원	10,000원	집행불가	식대	15,000원	집행불가	
제5조(기타사항) 본 리 등에 관한 규정		아니한 사항은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관	제5조(기타사항) 본 내규 준용한다.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형	· 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관련규정 변경

현 행	개 정(안)	개정요점
부칙(2020. 2. 21) 본 제정 내규는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21) 본 제정 내규는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1) 본 개정 내규는 2022.1.1.부터 시행한다.	